의 안 번 호

1860

[울신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인]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12. 3.(금)

나.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2. 3.(금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12. 14.(화)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 및「지방공무원법」일부 개정(2022. 1. 13. 시행)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- 나.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(안 제2조 ~ 제4조)
- 다.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(안 제5조 ~ 제6조)
- 라.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(안 제7조 ~ 제8조)
- 마.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 및 근속연수 계산(안 제9조 ~ 제10조)
- 바.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 및 신청(안 제11조 ~ 제12조)
- 사.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 등(안 제13조 ~ 제14조)
- 아.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등(안 제15조)
- **4. 근거법규** : 「지방공무원법」제66조의2,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제13조

5. 검토의견

본 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한 규칙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